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6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7.

발 의 자:김민석・박상혁・윤후덕

이용빈 · 이상헌 · 정청래

이광재・최종윤・강훈식

강병원 · 장철민 · 강득구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.

이에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,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, 올바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보건의 안심과신뢰를 확보하고자 함(안 제44조, 제61조, 제62조 및 제63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포함한다) 또는 지정"을 "포함한다), 지정 또는 승인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, 제21조제 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자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,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차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 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

제61조제1항에 제2호의2, 제8호의2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,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

8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조 제1항제5호까지, 제6조의2제1항, 제18조제2항제1호, 제21조제2항 또 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

10의2.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

급한 자

10의3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

10의4.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2조제1항제1호 중 "제18조제2항, 제20조, 제21조제2항, 제22조제1항, 제24조제2항"을 "제18조제2항제2호, 제20조, 제22조제1항"으로 한다. 제63조제1항제1호 중 "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1조제1항"을 "제51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"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을"을 "제18조제2항제2호를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·변경허가·승인·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 제4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 지) ① 마약류취급자, 마약류취 지) ① ------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 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 (품목허가를 포함한다), 지정 또 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 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 만,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 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, 향정 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 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・ 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 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허가(품목허가를 포함한다) 2. ---- 포함한다),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또는 승인-----가. ~ 사. (생 략) 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・③ (생략)

제61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61조(벌칙) ① -----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- 아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\_제18조제2항제1 호, 제21조제2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
- 자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, 제4조 제2항제7호 또는 제4조제3 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 우
- 차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 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 호까지의 규정, 제4조제2항제 7호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

3. ~ 8. (생략) <신 설>

9. • 10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1. · 12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- 제6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62조(벌칙) ① -----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1. -----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

승인을 받은 자

- 3. ~ 8. (현행과 같음)
- 8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제1호부 터 제6조제1항제5호까지, 제6 조의2제1항, 제18조제2항제1 호,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
- 9. 10. (현행과 같음)
- 10의2.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 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한 자
- 10의3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
- 10의4.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
- 11. 12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 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 항·제3항, 제18조제2항, 제20 조, 제21조제2항, 제22조제1 항, 제24조제2항, 제26조제1항 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

- 2. ~ 4. (생략)
- ②・③ (생략)
- 제63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
  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
   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
    규정을 위반한 자
  - 2. ~ 10. (생 략)
  - 11.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
    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
    약품을 취급한 자
  - 12. ~ 16. (생략)
  - ②·③ (생 략)

제18조제2항제2호,
제20조, 제22조제1항
<u> 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63조(벌칙) ①
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
1. 제51조제1항
2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제18조제2항제2호를</u>
12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<b>少・少(セッチ 乍</b> 百)